



## ■ 육종학회 회장에 배성호씨

- 부회장에는 설동섭씨등 8명선임 -

한국육종학회는 지난 6월29일 전북대 강당에서 85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호남작물시험장 배성호 장장을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는 설동섭(가축위생연구소) 소장 등 8명이 선임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임시이사회에 이어 총회, 특별강연, 학술발표회가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학술발표회 내용중 양계관련주제는 다음과 같다.

- 브로일러의 성장단계별 체중에 대한 모수 추정과 성별 성장곡선 추정 (서울대 오봉국·양영훈)
- 육용계 교배 종계별 잡종강세 발현율 추정 (축시 정일정·정선부·연성흠)
- 산란계 부화기간의 유전에 관한 연구 (축시 정선부·정일정)
- 브로일러에 있어서 발생시 체중과 성장단계별 체중 (최연호·오봉국·손시환)

## ■ 도계장 자체검사원 교육

대한수의사회(회장 이남신)는 가축위생 연구소와 함께 전국 도계장 자체검사원(수의사) 자질향상과 하절기 위생관대비에 관한 교육을 지난 6월24일부터 7월 6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급도계장의 신설에 따른 위생 문제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한 위생 닭고기 공급에 따른 검사원의 자질향상과 엄격한 품질관리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 실시했다.

## ■ 양계산물 유통규격 협의회

- 7월중 공개공청회 갖기로 -

양계산물 유통규격에 관한 연구 추진 협의회가 6월15일 오전10시 서울농대 축산과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가금학회(회장 오봉국)가 수행하고 있는 계란 및 육계의 유통규격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함에 있어 그동안의 결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가금학회 관계자, 축협관계자를 비롯 양계협회, 한냉, 천호, 생산자, 상인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한국가금학회는 7월 중순경 학계관련자,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 등을 초청하여 공개공청회를 연후 유통유격안을 최종 확정, 축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 ■ 미국 수수생산 대표단 사협 방문

- 네브라스카, 캔사스, USFGC관계자 -

미국 수수 생산자협회장 마비 포먼(Marby Forman)을 단장으로 하는 수수교역사절단이 6월 20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사절단은 미국 수수생산자 대표와 USFGC 관계자, 가금영양학 교수, 곡물시장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방문기간중 정부와 업계인사들을 만나 수수 수급전망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들은 6월25일 사료협회를 방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마비 포맨 회장의 미국 수수 생산자협회 활동상황 소개가 있었으며, 미국의 수수 수급 및 수수의 사료적 가치 등을 주제로 Dennis Hommon, Ron Saylor, Earl Gleaves, Thomas Sleight, Michelle Miller Doherty씨의 발표가 있었다.

## ■ 미국 및 호주가금류 및 생산물 수입금지

농수산부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7월 2일부로 다음과 같이 미국 및 호주산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고시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내용의 통합고시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수입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7. 4.

농 수 산 부 장 관

미국 및 호주산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

○수입 제한지역 및 물품

품 명 : 가금류(야생 조류를 포함한다)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지역 : ○미국(펜실바니아주, 뉴저지주,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캘리포니아주에 한함)

○호주(빅토리아주에 한함)

비 고 : 멸균한 것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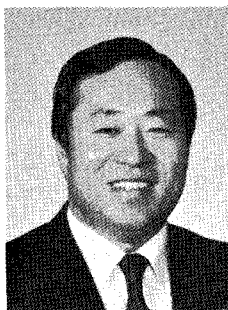
## ■ 7월13일 낙농학회 세미나

한국낙농학회(회장 이학철)는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7월13일 낙농산업 발전과 우수소비 확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는 김영교(고려대)교수, 유제창(건국대)교수, 김남용(한국낙농육우협회)전무, 김권철(빙그레)이사가 나설 예정이다.

## ■ 김현욱(민정) 김성식(신민) 의원 귀국



(김현욱 의원)



(김성식 의원)

생산자 자조금제도(check-off system)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출국, 미국축산업체를 시찰한후 지난 6월26, 27일 각각 귀국하였다.

## ■ 농협중앙회 윤근환회장 중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윤근환회장이 중임되었다. (85. 7. 3 부터 88. 7. 2까지)

## ■ 농수산부 축산국

가공이용과 이주호씨가 동물검역소 검역과로(수의관), 검역과 이희우씨는 검역소 제주지소장으로 전임되었다.

## ■ 농축수산유통사무실 이전

7월 1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변경주소 : 강남구 서초동 82-6

서초빌딩 401·402

• 변경전화 : 566-3710

(편집국) 562-2254(기획·조사실)

## ■ 한국사료정보센터(KFIC), AAAP (회장 한인규)

우리나라에 맞는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과 사양체계」를 발행하여 학계, 사료, 대기축, 양돈, 양계 및 관련 업계에 배부를 마쳤다.

필요한 분은 KFIC로 연락하기 바라며 발행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한 서문을 발췌 소개한다.

한국을 포함한 온대지역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각기 자국의 가축사육에 부합되는 가축사양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이는 사료 자원을 절약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나아가서 축산업을 통한 농민의 소득증대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자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사료정보센터(Korea Feed Information Center, KFIC)는 1980년 FAO에서 개최된 제 6 차 국제사료정보센터(International Network of Feed Information Center, INFIC)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가입된 바 있고 그후 INFIC의 한 멤버인 미국의 국제사료연구소(International Feedstuffs Institute, IFI)와의 공동 연구에 의해 1982년에는 국내외 자료를 모아 한국사료 성분표(Korean Tables of Feed Composition)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1983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 8 차 INFIC총회에서는 다음 9 차 총회를 제 3 회 AAAP 대회가 개최되는 서울에서 1985년 5월에 개최기로 결의하고 이때 “온대지방의 가축사양체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KFIC가 AAAP와 공동으로 주최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된 바 있었다.

따라서 KFIC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NAS-NRC와 공동연구에 의해 먼저 국내외 연구결과들과 선진외국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과 사양체계”란 이름의 한국사양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사양표준 제정을 위한 원고는 미국과 한국의 석학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초고가 1984년 3월 31일에 완성되고, 이후 보완·수정되어 1984년 6월 11일에 실무위원회를, 1984년 6월 23일에 전체위원회를 열어 각 분과별로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한 후 영문으로 번역하여 1984년 9월 3 일까지 미국축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환경과 비슷한 온대지방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영문책자 “Feeding Systems of Animals in Temperate Areas”도 발간하기에 이르

렀다.

○한국사양표준 제정위원회  
한인규, 서울대학교(위원장)  
김춘수, 단국대학교  
맹원재, 건국대학교  
이영철, 강원대학교  
이택원, 충북대학교  
정근기, 영남대학교  
L. E. Harris, 유타주립대학교  
D. E. Ullrey, 미시간주립대학교

## ■ 도살금지가축고시

농수산부는 6월 22일자로 축산법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금지 가축을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1. 도살금지 대상가축의 종류 및 성별, 연령  
○임신된 암소(한우, 육우, 젖소, 교잡우)와  
종축 및 후보종축  
○연령 : 제한없음
2. 도살금지기간 : 농수산부장관이 가축의 보호, 육성과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할 때까지
3. 본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유가공협, 친선바둑대회 개최

한국유가공협회(회장 강성원)는 회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사 대항 제 1 회 친선 바둑대회를 지난 6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회원사간의 단합된 힘과 어려운 업계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는 7 개 회원사 10개팀이 출전, 열띤 경쟁끝에 영예의 우승은 한국야구르트, 2 위는 서울유유, 3 위는 남양유업이 차지했다.

##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월 11일 농수산부령)

제 4 조(소독 등의 명령)① 가축의 소유자중 300 제곱

미터 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는 매월 1회 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시설에 관한 증빙서류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가축 소유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소독명령이나 쥐·곤충 등을 없애는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과 쥐·곤충 등을 없애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검역물과 수입금지 지역) ① 법 제21조 제1호의 지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제류 및 기제류의 동물
2. 개, 고양이
3. 토끼
4.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및 애완조류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야생조류
7. 정액 및 수정란
8. 원유 및 생치이스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 쏘세지, 베이컨 등 수육가공품
10.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 살, 뼈, 가죽, 털, 뿔, 굽, 힘줄, 내장, 알, 지방, 피, 혈분, 비늘 및 오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② 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 검역물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제1호 단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수입금지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정검역물을 신고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
2. 지정검역물을 수송중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

제15조의 2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이행기간)

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가 수입 금지물건 등을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할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검역기관이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거나 부패·변질하거나 또는 부패·변질할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1. 동물의 경우에는 15일 이내
2.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1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 농수산부 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하여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국에서 증명받아야 할 검역상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 제1항 각호의 지정검역물중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
2. 건조된 지정검역물중 소량의 휴대품과 소포 우편물
3. 박제품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광견병 예방접종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개, 고양이

제18조 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별표 1]

1. 소독방법의 종류란의 약물소독 제8호의 방법란 방법란중 “크레졸수(크레졸 3에 물97을 섞은 것)를”을 “크레졸 비누액 3~5%를”로 하고, 동 약물소독 제15호란 다음에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류	방 법	소독목적물	비고
	16. 유화소다(2%)를 를 분무기 등으로 뿌리거나 소독목적 물을 이에 담근다.	○뼈류 ○피류 ○케이싱용기	

[별표 2]

1. 소독방법의 종류란의 약물소독란의 제5호란, 제6호란에 7호란 및 제9호란의 소독목적물란 및 동표 2 실시기준의 나호 및 다호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한다.

[별표 3]

가. 소각기준의 구분란의 폐사체의 소각란, 동폐사체 소각란의 소각실시장소란의 제1호, 동 폐사체 소각란의 소각방법란의 제2호의 가목 및 나목 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하고, 동표의 2, 매물기준중 “2”를 “나”로 하며, 동 매물기준의 구분란, 매물 기준의 구분란, 매물실시장소란·매물방법란 및 적 요란 및 적요란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한다.

[별표 4]

2. 지정검역물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지정검역물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5]의 검역물의 종류란의 제4호란중, “토끼”를 삭제하고, 동별표 비고란중 “병원체가 전파될 염려가”를 “병원체가 퍼질 염려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내에 도착된 지정검역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없이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는 화주에게 반송·소각·매몰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 3,762호, 1984. 12. 31)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축의 소유자중 300제곱미터 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는 매월 1회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축방역관은 이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함(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수입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할 지정검역물에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같이 들어올 우려가 많은 생치즈와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세지·베이컨등 수육가공품을 추가하여 전염병의 병원체의 유입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 제8호

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지정검역물이 수입되거나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가 없는 지정검역물이 수입된 때에는 화주에게 반송을 명하고 반송하는 경우가 축전염병예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을 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을 동물의 경우에는 15일 이내, 동물의외의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정하되,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거나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함(영 제15조의 2)

라. 지정검역물중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에 광견병예방접종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개와 고양이를 추가함(영 제16조 제2항 제5호).

마. 수입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검역관이 검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공항 또는 항만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표지를 함으로써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 제1항 단서).

바.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등이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수입한 자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에 수송된 지정검역물이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도록 함(영 제21조 제2항).

사. 수입육류의 가공장등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수의사를 두어

야 하는 바, 국립동물검역소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거나 그 밖에 관리수의사를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 제2항 단서).  
(농수산부 제공)

## ■ 사료관리법시행령 개정령

사료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이 6월28일 대통령령 제 11,711호로 공포되었다.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 주요골자

- 가. 사료에 있어서 인정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허용 기준을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있는 사료를 생산하도록 함(령 제12조 및 별표1)
- 나. 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등 처분에 앞서 청문을 행할 경우에는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령 제13조).
- 다. 사료제조업자가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영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그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과징금의 금액을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납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14조 및 제15조).
- 라. 소·돼지등 가축외의 동물이나 어류용 배합 사료와 보조사료(항미제를 제외함)의 제조업허가권과 그 감독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그 수급조절과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

### [별표 1]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제12조관련)  
다음의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이상 함유된 사료를 유해사료로 한다.

유해물질명	사료종류별	허용기준	
비 소	배합사료	100ppm	
불 소	젖소 배합사료	100ppm	
	고기소 배합사료	100ppm	
	돼지 배합사료	200ppm	
	닭 배합사료	400ppm	
	광물질 첨가물	1,800ppm	
	인산염 및 칼슘염류(인 함량 18%기준)	1,800ppm	
크 롬	닭 배합사료	300ppm	
	닭 배합사료외의 배합사료	500ppm	
	어분·어즙흡착사료 및 골분	100ppm	
	우모분·육분·육골분 및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300ppm	
	피혁가공분말	1,000ppm	
	나	배합사료	10ppm
나	어분·어즙흡착사료·우모분·육분·육골분·피혁가공분말·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및 광물질첨가물	10ppm	
	골분·골회·석회석·인산염 및 칼슘염류	30ppm	
	옥수수·박류 및 낙화생부산물	25ppm	
	수 은	배합사료	0.4ppm
수 은	어분·어즙흡착사료·우모분·육분·육골분·피혁가공분말·골분·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석회석·인산염 및 칼슘염류·골회·광물질첨가물·옥수수·박류 및 낙화생부산물	0.5ppm	
	아프라	배합사료	20ppb
	특 신	사료용곡물 및 동부산물	50ppb
	면실박·낙화생박 및 낙화생부산물	50ppb	

낭비없는 알뜰피서  
약속받는 밝은 내일